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5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양부남·강유정·권향엽

김한규 · 김현정 · 박민규

박수현 • 박지원 • 박홍배

이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5장(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단등 살포

-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전단등 살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⑤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전단등 살포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접수한 통일부장관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 1.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4조의4(해산 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단등 살포
- 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전단등 살포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 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전단등 살포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 살포를 한자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3. 제2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금지) 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전단등 살포</u>	<u><삭 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장 전단등 살포
<u><신 설></u>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
	은 신고서를 전단등 살포를 시
	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u>야 한다.</u>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
	시 내주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경철서장(전단등의 살 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 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알려 야 한다.

⑤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 고한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 힌 전단등 살포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신 설>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통일부장 관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수 있다.

- 1.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

 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해산 명령 등) ① 통일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단등 살포 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신 설>

<u>제5장 벌칙</u> <신 설>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전단등 살포
- 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전단등 살포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전단등 살 포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 살 포를 한 자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하고 전단등 살포를한 자
- 3. 제2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